

#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0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‘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’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는바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개정으로 관련 기관위임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- 나.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의 위임에 따라 향후 제정할 규칙에서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  - 2) 입법예고('20. 7. 30.~8. 19.)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### 4. 작성자

하천관리과 이 순 호 (2133-3871)